

화순군 공고 제2020-19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합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31.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배○○(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등 141건(별첨 참고)
3. 공고기간: 2020. 12. 31. ~ 2021. 1. 14.(14일간)
4. 문 의 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061-379-3463)
5. 안내사항

가.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3, FAX 061-379-38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화 순 군 수



1. 공고대상 : 34명(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0. 1. 1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5. 기타사항 :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문의사항은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061-379-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